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4드단○○○○ 손해배상(기)

원 고 박AA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4.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장CC은 1984. 7.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 박DD, 딸 박EE을 두었다.

나. 장CC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와 하루 평균 7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는 등 잦은 연락을 하였고, 2011년경에는 피고가 거주하는 마산시 소재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를 운행하지 않음에도 마산 및 진해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등 마산지역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백화점에서 남자 옷을 구입하고 외식업체에서 잦은 외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장CC의 잦은 통화와 외출, 마산을 자주 방문하는 행동 등을 통하여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2011. 3.경 그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피고가 장CC에게 "당신이 보고 싶어서 술 한 잔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보고 장CC과 피고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관계를 따지며 폭언을 하였고, 결국 피고는 그 일을 계기로 2011. 10.경 처와 이혼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경 장CC과 화해하였으나 그녀의 행동을 계속 의심하다가 2012. 7. 1. 그녀를 미행하였는데 장CC이 버스를 타고 마산에 있는 피고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을 목격하고 경찰을 대동하여 피고의 집에 방문하였더니 장CC은 짧은 바지 차림으로 있던 중 원고를 보고 2층으로 도망하였다가 옷을 갖추어 입고 내려왔다.

바. 장CC과 피고는 2012. 7. 중순경 이후로도 하루에 10여 차례 통화하는 등 잦은 연락을 계속하였다.

사. 원고는 평소에도 장CC이 모임에 나가거나 퇴근시간이 늦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도 장CC을 의심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2011년경부터는 장CC의 외도를 적극적으로 의심하여 장CC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원고는 ① 2011. 3.경 장CC의 입 부분을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② 2011. 4. 말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장CC에게 폭언 및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녀의 생식기에 오이를 집어넣는 등 성추행하였으며, ③ 2012. 6. 30.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장CC에게 큰 소리로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아. 장CC은 원고의 난폭한 행동을 피하여 2012. 7. 3. 집을 나왔다가 2012. 7. 17. 비상키를 열고 집에 들어왔으나 이를 알게 된 원고가 귀가하여 그녀를 위협하므로 같은 날 집을 나와 그로부터 별거하였다.

자. 장CC은 2012. 8. 7.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2. 6. 장C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쌍방의 대등한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재산분할은 일부 인정되었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CC과 피고 사이에 마산 등지에서 잦은 연락 및 만남으로써 친구간의 교류를 넘어 남녀 간의 만남을 지속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는, 원고가 장CC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2. 7.경 장CC과 개인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한 만남으로써 원고와 장CC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한편, 원고 또한 장CC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그녀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극단적인 폭력을 수차례나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가공하였고 그 책임정도는 장CC과 대등하다). 피고는 원고와 장C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관계 이전에 원고의 폭언, 폭행으로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장CC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피고가 혼인파탄에 가공한 책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2.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기